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68호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5-1719호(2025.10.2.)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재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공간포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I. 열람기간: 2026. 4. 30. ~ 2026. 5. 14.(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II.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동작구청 8층 도시계획과 (장승배기로 70, 8층)
- III.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IV.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역명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56,537.7	감)596.3	55,9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 (2014. 10. 30.)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V.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VI. 의견제출방법: Fax 02-828-4325, e-mail cjh307@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주민의견서 제출 가능
-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

VII. 기타사항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1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7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820-1328, FAX : 828-4310, E-mail : hwan1747@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를 “폐기물관리법 제4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당해”를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3명-----.
③ (생략)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그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도로명 주소 :
- 연 락 처 :

내 용	의 견	비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6-87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 수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변경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을 현행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정비(안 제2조의2)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정비(안 제3조의2 제2항, 제3항제1호)

다. 기금 회계관리공무원 현행화(안 제4조 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 : 820-1326 FAX : 828-4310, E-mail : kafe123@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세입조치 할”을 “세입조치할”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9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을 “기금 관련”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공무원의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을 “소속 환경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상환 하도록”을 “일시상환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허위기재”를 “거짓 기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퇴직 할”을 “퇴직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u>세입조치</u>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 -----. ----- <u>세입조치할</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3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2명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③ ----- -----.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과장, 예산회계과장, 청소행정과장

2. (생 략)

3.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⑥ (생 략)

제4조(기금 회계관계공무원) ① (생 략)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학자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③ (생 략)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의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2.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할 경우

3. 4. (생 략)

1. 재산관리과장-----

2. (현행과 같음)

3. 기금 관련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 회계관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재산관리과장-----.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대여 대상) ----- 소속 환경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 일시상환하도록 -----

-----.

1. ----- 거짓 기재 -----

2. ----- 퇴직할 -----

3. 4.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도로명 주소 :
- 연 락 처 :

내 용	의 견	비 고

인사발령

[발령 제169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박 형 규	신 대 방 제 1 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3 조 제 2 항 제 4 호 규 정 에 따 라 휴 직 을 명 함 (2026년4월23일부터 2027년4월22일까지)

2026.4.23.字.

[발령 제170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류 화 속	보 건 행 정 과	임 기 제 지 방 사 보 건 진 료 주 사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16.06.21.~2026.06.20.)

2026.6.21.字.

[발령 제171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황 설 빈	보 건 의 약 과	지 방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마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4.07.01.~2026.06.30.)

2026.7.1.字.

[발령 제172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김 형 길	홍 보 담 당 관	임 기 제 지 방 기 행 정 서 기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16.07.25.~2026.07.24.)

2026.7.25.字.

[발령 제173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황 순 영	주 차 관 리 과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2.19.~2026.07.31.)
2	임 승 속	민 원 여 권 과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2.19.~2026.07.31.)
3	이 인 혜	교 통 행 정 과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2.19.~2026.07.31.)
4	임 혜 성	복 지 사 업 과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5.07.~2026.07.31.)
5	박 종 윤	어 르 신 정 책 과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2.19.~2026.07.31.)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6	이 홍 병	노 량 진 제 1 동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4.01.~2026.07.31.)
7	양 유 미	상 도 제 2 동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2.19.~2026.07.31.)
8	하 지 현	흑 석 동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6.01.02.~2026.07.31.)
9	김 선 미	사 당 제 3 동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2.19.~2026.07.31.)
10	김 민 정	사 당 제 5 동	지 방 한 시 임 기 제 9 호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1 조 제 2 호 에 의 거 당 연 퇴 직 (임용기간 : 2025.02.19.~2026.07.31.)

2026.8.1.字.

[발령 제174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이 지 은	재 산 세 과	지 방 세 무 주 사 보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 3 조 제 2 항 제 4 호 규 정 에 따 라 휴 직 을 명 함 (2026년4월26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2026.4.26.字.

[발령 제175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정 앞 새	복 지 사 업 과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2026.4.27.字.

[발령 제176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김 은 정	감 염 병 관 리 과	지 방 간 호 주 사 보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2026.4.26.字.

[발령 제177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노 지 연	보 건 행 정 과	지 방 보 건 주 사 보	복 보 건 소 을 근 무 를 명 함

2026.4.29.字.

[발령 제178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김 대 관	치 수 과	지방공업서기보 (지방기계계)	원그에직을의하면여함
2	이 지 현	건강증진과	지방간호주사보	복보직소를근무를명명함

2026.5.1.字.

[발령 제179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배 성 은	운영지원과	임행기제지방기 정서방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연장을명함 (2026년5월1일부터 2026년6월30일까지)

2026.5.1.字.

[발령 제180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이 지 연	재건축지원과	지방시설주사 (건축)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명함 (2026년4월28일부터 2027년4월28일까지)

2026.4.28.字.

[발령 제181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장 미	사당2동	지방간호서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연장을명함 (2026년5월3일부터 2027년8월2일까지)

2026.5.3.字.

[발령 제182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김 도 희	운영지원과	임행기제지방 정주사보	원그에직을의하면여함
2	최 소 라	운영지원과	임행기제지방 정주사보	원그에직을의하면여함
3	김 신 혜	홍보담당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원그에직을의하면여함

2026.4.28.字.

[발령 제183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령 사항
		소 속	직 급	
1	정 필 성	핵심정책추진단	임행기제지방 정주사	원그에직을의하면여함
2	최 필 수	운영지원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원그에직을의하면여함

2026.4.28.字.

[발령 제184호]

연번	성 명	현 직		발 령 사 항
		소 속	직 급	
1	박 정 미	일 자 리 정 책 과	지 방 행 정 주 사	생활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취업지원팀장 겸임을 면함
2	김 주 연	치 수 과	지 방 행 정 주 사	생활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취업지원팀장에 보함
3	정 은 미	장 애 인 복 지 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장에 보함
4	김 시 영	경 제 정 책 과	지 방 행 정 주 사	노 령 진 제 1 동 생 활 보 장 팀 장 에 보 함

2026.4.30.字.

www.dongjak.go.kr



동작구